손해배상(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2. 2018재가합5174]



【전문】

【원고(재심원고)】원고 1 외 7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중) 【피고(재심피고)】대한민국(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태훈) 【재심대상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3. 선고 2013가합526555 판결

【변론종결】2019. 6. 21.

【주문】

1

- 1.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 2. 피고(재심피고)는 원고(재심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6. 26.부터 2019. 7.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3. 원고(재심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 재심 전후의 소송비용을 합하여 50%는 원고(재심원고)들이, 나머지 50%는 피고(재심피고)가 각 부담한다.
-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6. 26.부터 2015. 9.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6. 26.부터 2015. 9.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6. 26.부터 2015. 9.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6. 26.부터 2015. 9.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유]

】1. 기본적 사실관계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경위

- 1) 원고들은 2013. 6. 18.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피고가 ① 1980. 12.경 당시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근무하던 원고들이 민주노동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으로 하여금 원고들을 해고하게 하고, ② 원고들이 포함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고, 이를 배포함으로써 원고들이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인권 침해를 저질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각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5,000만 원을 구한다.
- "는 취지의 이 사건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6555호)를 제기하였다.
- 2)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15. 9. 3. "원고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주화보 상심의위원회'라 한다)로부터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23호로 제정되고, 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라)목에서 정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결정을 받았고, 원고들이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각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이상,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는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해직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
 - "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 3)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원고들 및 피고가 모두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2015. 9. 24. 확정되었다.
 - 나. 원고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인용 및 이 사건 재심청구
- 1)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5. 7. 28. 이 법원에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은 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까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
- "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5. 8. 30. 원고들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이에 원고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2) 헌법재판소는 관련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2018. 8. 30.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가10, 18, 20, 22, 25, 2018헌가1(병합), 2014헌바180, 304, 305, 2015헌바133, 283, 284, 357, 434, 435, 436, 437, 441, 442, 2016헌바23, 49, 64, 67, 73, 98, 165, 215, 244, 308, 348, 375, 393, 2017헌바251, 281, 374, 395, 468, 2018헌바94, 157(병합) 결정, 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
- 3) 원고들은 이 사건 위헌결정을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따라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유]

】1. 기본적 사실관계

-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경위
- 1) 원고들은 2013. 6. 18.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피고가 ① 1980. 12.경 당시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근무하던 원고들이 민주노동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으로 하여금 원고들을 해고하게 하고, ② 원고들이 포함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고, 이를 배포함으로써 원고들이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인권 침해를 저질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각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5,000만 원을 구한다.
- "는 취지의 이 사건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6555호)를 제기하였다.
- 2)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15. 9. 3. "원고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주화보 상심의위원회'라 한다)로부터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23호로 제정되고, 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라)목에서 정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결정을 받았고, 원고들이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각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이상,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는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해직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
 - "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 3)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원고들 및 피고가 모두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2015. 9. 24. 확정되었다.
 - 나. 원고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인용 및 이 사건 재심청구
- 1)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5. 7. 28. 이 법원에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은 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까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
- "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5. 8. 30. 원고들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이에 원고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2) 헌법재판소는 관련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2018. 8. 30.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가10, 18, 20, 22, 25, 2018헌가1(병합), 2014헌바180, 304, 305, 2015헌바133, 283, 284, 357, 434, 435, 436, 437, 441, 442, 2016헌바23, 49, 64, 67, 73, 98, 165, 215, 244, 308, 348, 375, 393, 2017헌바251, 281, 374, 395, 468, 2018헌바94, 157(병합) 결정, 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
- 3) 원고들은 이 사건 위헌결정을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따라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유】

- 】1. 기본적 사실관계
 -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경위
- 1) 원고들은 2013. 6. 18.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피고가 ① 1980. 12.경 당시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근무하던 원고들이 민주노동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으로 하여금 원고들을 해고하게 하고, ② 원고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이 포함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고, 이를 배포함으로써 원고들이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인권 침해를 저질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각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5,000만 원을 구한다.

- "는 취지의 이 사건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6555호)를 제기하였다.
- 2)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15. 9. 3. "원고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주화보 상심의위원회'라 한다)로부터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23호로 제정되고, 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라)목에서 정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결정을 받았고, 원고들이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각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이상,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는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해직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
 - "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 3)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원고들 및 피고가 모두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2015. 9. 24. 확정되었다.
 - 나. 원고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인용 및 이 사건 재심청구
- 1)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5. 7. 28. 이 법원에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은 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까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
- "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5. 8. 30. 원고들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이에 원고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2) 헌법재판소는 관련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2018. 8. 30.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가10, 18, 20, 22, 25, 2018헌가1(병합), 2014헌바180, 304, 305, 2015헌바133, 283, 284, 357, 434, 435, 436, 437, 441, 442, 2016헌바23, 49, 64, 67, 73, 98, 165, 215, 244, 308, 348, 375, 393, 2017헌바251, 281, 374, 395, 468, 2018헌바94, 157(병합) 결정, 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
- 3) 원고들은 이 사건 위헌결정을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따라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